#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

# 심 사 보 고 서

청원 번호 11

2019년 11월 27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1.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30일, 이장희 외 180명

나. 소개의원: 권수정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년 10월 31일

라. 상정일자 : 제290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9년 11월 27일 상정. 채택)

## 2. 청원의 요지

## 가. 청원이유

○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환경사고 등으로부터 서울시민의 보건 안전은 물론 자연환경을 지키고 주한미군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신속한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요청함.

## 나. 주요내용

○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및 환경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사후 조치하기 위한 조례 제정 요청 건

## 다. 청원소개의견 요지(소개의원: 권수정 의원)

○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환경사고 등으로부터 서울시민의 보건 안전은 물론 자연환경을 지키고 주한미군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신속한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것임.

## 3. 검토보고요지(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 개요

- 본 청원은 반환예정인 용산미군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고 에 대한 서울시와 주한미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고처 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 반환된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조성예정인 용산공원을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관련 조례의 제정을 요청하는 사안임.

### ■ 서울시내 미군기지 오염 실태

○ 현재 서울시내 미군기지는 총 12개소이며 반환된 것이 3개소이고 미반환된 곳이 9개소로 이 중 오염이 확인된 곳은 유엔사(용산), 캠프그레이(동작), 사우스포스트(용산 녹사평역 인근), 캠프킴(용산) 등 4개소(〈표 1〉 참조)임.

<표 2> 서울시내 미군기지 세부현황

	기 지 명	위 치	위 치 면적(천m²) 오염여부		비고
	계	12개소	2,985	오염 4개소	
용산	① 메인포스트	용산기지 내	792	녹사평역	(반환예정)
기지	② 사우스포스트	용산기지 내	1,881	(지하수)오염	(반환예정)
0.21	③ 캠프 킴	용산기지 외부	48	(토양+지하수)오염	(반환예정)
용산   기지	④ 유엔사	용산기지 외부	53	(토양)오염	반환기지
주변 -	⑤ 미8군 수송부	용산기지 외부	77		(반환예정)
	⑥ 501 정보대	501 정보대 용산기지 외부			(반환예정)

	기 지 명	위 치	면적(천m²)	오염여부	비고
	계	12개소	2,985	오염 4개소	
	⑦ 니블로베럭(공동주택)	한남동	28		
ر داد	⑧ 캠프 모스(통신)	남산타워 옆	30		
기타	⑨ 8군 휴양소	남산(한남동)	19		(반환예정)
산재 기지	⑩ 캠프 그레이	동작구 대방동	9	(토양+지하수)오염	반환기지
/ ^	① 극동공병단	중구 방산동	42		(반환예정)
	② 서울역 미군사무소	서울역	1		반환기지

○ 오염된 미군기지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토양 및 지하수가 오염 되었으며 반환기지의 경우 국방부가 정화를 완료하였으나, 미반환 기지의 경우 2003.10월 한·미합동회의에서 미군기지 내부는 미 군이, 기지주변은 서울시가 복원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오염정화 를 실시한 후 서울시는 국가에 배상 청구1)를 하고 있는 실정임.

<표 3> 오염 미군기지 세부현황

7. 13	미 반:	환기지	반환기지		
구 분	사우스포스트	캠프킴	캠프그레이	유엔사	
위 치	녹사평역 주변 (용산 이태원 34-2일대)	삼각지역 주변 (용산 한강로 1-1일대)	동작 대방동 340-4	용산 동빙고동 310-6	
오염분류	지하수	토양 및 지하수	토양 및 지하수	토양	
오염확인	지하수오염 발견 ('01.1.)	기름유출 발견 ('06.7.)	환경오염조사 ('05.11.~'07.09.)	환경오염조사 ('05.08.~'07.09.)	
추진실적	주변지역 정화중 ('02~'18년)	주변지역 정화중 ('08~'18년 )	국방부 정화완료 ('07.09.~'11.10.)	국방부 정화완료 ('07.09.~'13.9.)	
정화비용	53.7억 (2018년 말 기준)	19.2억 (2018년 말 기준)	15억 (국방부 예산)	14억 (국방부 예산)	

○ 미군기지 주변 토양오염실태조사(2014년~2017년) 결과 총 10개

<sup>1) 🗌</sup> 서울시 정화용역비 환수소송 관련

지점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표 3) 참조)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 소송 승소에 따라 2017.11.29 일 환경부가 공개한 기지 내·외부 지하수오염 조사결과를 보면 벤 젠이 최대 671배까지 기준을 초과한 것<sup>2)</sup>으로 나타났음.

<표 4> 미군기지 주변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구분	조사니	개역		초과지역	초과	초과	토양오염
一 丁七	지역	지점수	시료수	(지목)	항목	농도	우려기준
	소계	9	45	1			
2014년	녹사평역 주변	8	30	0			
	캠프킴 주변	1	15	1(도로)	TPH	10,064	2,000
	소계	13	48	3			
2015년	녹사평역 주변	12	33	1(도로)	TPH	2,511	
2010 년	캠프킴 주변	1	15	2(도로)	TPH	6,634	2,000
		1	19		TPH	5,995	2,000

#### ○ 근거법령

- 「주한미군민사법」제2조(국가의 배상책임)
  - ※ 주한미군민사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 「국가배상법」

#### ○ 판결요지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고용원 또는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 구성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손해를 배상
- 합중국 군대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가 점유·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적용한다.
- 피고(대한민국)은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에 따라 원고(서울시장)이 유류오염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정화비용은 매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국가로부터 전액 환수 조치
  - 환수실적 : 약 88억원('01.~'17년 정화비 67억, 지연손해금 21억)
  - 추후 미측에 배상청구 근거확보를 위해 환수소송 지속 수행
- 2) ▶기지 내부 : 25개 관정 중 17개소 기준초과/벤젠 최대 671배(10.077/0.015)
  - ▶ 기지 외부 : 34개 관정 중 14개소 기준초과/벤젠 최대 470배( 7.051/0.015)

7 H	조사니	개역		초과지역	초과	초과	토양오염
구분 	지역	지점수	시료수	(지목)	항목	농도	우려기준
	소계	12	117	5			
	녹사평역 주변	15	69	2(도로)	TPH	3,110	2 000
2016년	무사성의 구현	15	09	2(王生)	TPH	2,209	2,000
2010년					TPH	2,126	2,000
	캠프킴 주변	1	48	3(도로)	크실렌	72	15
					TPH	5,097	2,000
	소계	42	209	1			
	수송부 주변	8	47				
	8군휴양소 주변	2	4				
201713	니블로베럭 주변	2	9				
2017년	메인포스트 주변	22	111	1(대지)	TPH	1,285	800
	캠프모스 주변	2	4				
	정보대 주변	1	4				
	극동공병단 주변	5	30				

○ 또한, 시민단체가 미국 정보자유법을 활용하여 1990~2015년까지 용산미군기지 내부에서 발생한 오염사고 기록에 대한 공개요청에 따라 미 국방부 산하 태평양사령부가 공개(2017.4월)한 자료를 살펴보면, 기지 내부 유류 유출사고는 해당 기간 내에 총 84건으 로 보고되었음([붙임] 참조).

## ■ 청원에 대한 의견

- 서울 중심부에 있는 용산미군기지는 지리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상징적인 시설로서 최근 기지 반환 협의 및 용산공원 공론화가 본 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 기지 내·외부가 유류유출 등으로 인해 토양 및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어, 온전한 기지 반환을 위해서 철저한 환경조사 및 오염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

- 그러나 현재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up>3)</sup>(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제4조<sup>4)</sup>에 따라 미국정부는 미군기지 내부 원상회복 및 보상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며,
- 미군기지 내·외부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공유, 조사 등과 관련하여 서도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에 따른 후속문서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2002.1.18.)"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직접적으로 미군 에게 관련 사항을 요청하지 못하고 환경부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서울시가 제한적인 위치에 있다하더라도 청원에서 요청한 바와 같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서울시와 시민이 함께 주한미군기 지 내·외부 환경오염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주한미군 측에 보다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 하겠음.

#### 3)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 체 결: 1966. 7월

○ 정식명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 약칭: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또는 '한미 SOFA'(Status of Force Agreement)

- 효력 : 본문 및 후속문서(4개) 모두 법률적 효력 있음
  - ※ 합의의사록은 국회 비준, 특별양해각서는 대통령의 재가
- 조문구성 : 본문 및 4개의 후속문서
  - ① 합의의사록
  - ② 양해사항
  - ③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 ④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 ※ 합의의사록과 특별양해각서에 환경관련 조항 명시

#### 4) 제4조 시설과 구역-시설의 반환(Facilities and Areas - Return of Facilities)

1.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 회복하여야 할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 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지지 아니한다.

### ■ 조례안 제정 요구에 대한 의견

- 청원으로 요청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현재 반환예정인 용산미군기 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 및 정화를 위해 서울시장이 적극 노력하 고, 기지 반환 후 평화·생태공원이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 고자 하는 것인데.
- 서울 관내에는 용산미군기지를 포함하여 9개소의 미반환 미군기지가 있는 상황((표 1) 참조)이므로, 용산미군기지만을 대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 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서울 관내 주한미군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됨.
- 물순환안전국 역시 서울 관내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서울시가 시민들의 보건안전 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조 례 제정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나,
- 용산미군기지 평화·생태공원 공원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전문가 및 시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하여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임.
- 참고로, 주한미군기지 내·외부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경기도, 평택시, 부산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남구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6>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자
경기도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16.08.03.
평택시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16.11.14.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17.02.10.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19.10.10.

[붙임] 1990년~2015년 미군기지 유류유출 사고 내역(84건)

## [붙임] 1990년~2015년 미군기지 유류유출 사고 내역(84건)

				ムラコ	ヘラコ		
연번	일시	지역	빌딩번호	유출량 (Gal)	유출량 (L)	유종	비고
1	1991-09-19	수송단 (TMP)	5709	50	189	디젤	
2	1992-06-05	수송단 (TMP)	5729	200	756	휘발유	
3	1992-12-02	용산	5402	30	113	코팅시너	
4	1993-01-26	용산	501st 모터풀	10	37	디젤	
5	1993-12-28	수송단 (TMP)	5709	177	669	디젤	
6	1995-03-21	용산	7051 (UST 600)	Unknown		디젤	-오염토양 100㎡굴착 새토 양 140㎡ 매립
7	1995-03-24	극동공병단 (FED)	62	700	2,646	디젤	-세부 내용 없음
8	1995-04-21	용산	1669	Unknown		디젤	
9	1995-09-26	극동공병단 (FED)	55	<1,000		디젤	-세부 내용 없음
10	1997-10-02	용산	5102	7,620	28,803	디젤	-8월12일 발견 여러 차례 유출된 것으로 추정 -환경부 통보
11	1997-12-09	용산	4506/4552	1,500	5,670	디젤	-유출시점 알 수 없음
12	1998-04-09	용산	5531	5	19	디젤	-용산구, 환경부 통보
13	1998-05-09	용산	4474 (UST 600)	<100		디젤	
14	1998-06-15	용산	4041	500	1,890	디젤	
15	1998-07-02	용산	4194	300	1,134	디젤	<ul><li>용산구, 환경부 통보</li><li>한달 전 보고되지 않은</li><li>110갤런 이하 사고 발생</li></ul>
16	1998-07-06	캠프코이너	1127	150	567	디젤	-배수로와 지하로 스며듦
17	1998-12-01	용산	4723 (UST3-10,000)	2,000	7,560	휘발유	-도급업체 조사결과 휘발 유가 지표면 아래 6피트정 도 젖어있어 제거
18	1998-12-04	용산	4723 (AST)	150	567	디젤	-98.10.25.부터 유출된 것 으로 추정
19	1999-02-04	캠프 킴	1232	60	227	디젤	
20	1999-06-01	용산	7093	6	23	디젤	

연번	일시	지역	빌딩번호	유출량 (Gal)	유출량 (L)	유종	비고
21	1999-07-14	용산	4110	50	189	디젤	
22	1999-08-06	용산	4544	Unknown		디젤	
23	1999-10-18	용산	1327 (AST1330-1,00 0)	391	1,478	디젤	
24	1999-11-05	용산	4751	100	378	디젤	-여름부터 유출된 것으. 추정, 11월 건물 4758 서 발견. 원인은 건· 4713, 4751 -토양50㎡ 매립 필요
25	2000-01-10	용산	7125 (UST 600)	1,717	6,490	JP-8	
26	2000-03-28	용산	4275	284	1,074	JP-8	
27	2000-08-29	캠프코이너	1050	Unknown		디젤	
28	2000-08-31	캠프코이너	1189	50	189	JP-8	
29	2001-07-24	용산	5498 (AST 600)	150	567	JP-8	-세부 내용 없음
30	2001-10-11	용산	5495	Unknown		디젤	
31	2001-11-02	용산	7003	1,250	4,725	JP-8	-세부 내용 없음
32	2002-01-24	용산	7038 (UST 600)	300	1,134	JP-8	
33	2002-03-14	용산	3793(AST 1,000)	200	756	JP-8	
34	2002-03-27	용산	7026(UST 600)	228	862	JP-8	
35	2002-05-01	캠프코이너	1042(AST 1,000)	3,500	13,230	JP-8	-용산 인근 배수로, 서울 하수체계로 합수됨
36	2002-05-06	용산	2700	200	756	JP-8	
37	2002-05-14	캠프코이너	1016(UST 7,500)	Unknown		JP-8	−SOFA 환경분과위/ 환 부통보 −세부 내용상 5,700갤런 로 추정함
38	2003-03-14	용산	1300	Unknown		Unknow n	-서울시, 환경부 통보
39	2003-07-07	용산	4216(AST 2,500)	400	1,512	JP-8	-서울시, 환경부 통보
40	2003-09-22	용산	1488(UST 1,200)	900	3,402	JP-8	

연번	일시	지역	빌딩번호	유출량 (Gal)	유출량 (L)	유종	비고
41	2004-03-24	용산	4156	Unknown		JP-8	
42	2004-08-04	캠프코이너	1044(AST 275)	200	756	JP-8	
43	2004-10-12	용산	7044(AST 2,500)	618	2,336	JP-8	
44	2004-12-06	캠프코이너	1130(AST 600)	Unknown		JP-8	
45	2004-12-07	용산	7073(AST 300)	150	567	JP-8	
46	2004-12-20	캠프 킴	12(AST 1,000)	500	1,890	JP-8	-세부 내용 없음
47	2005-03-22	용산	1409(UST 600)	90	340	JP-8	-환경부 통보
48	2005-05-26	용산	1619(AST #1669-2)	400	1,512	JP-8	-환경부,서울시,용산구에 월14일 연료 유출에 대한 통보
49	2005-06-01	용산	Gate #8	3	11	휘발유	
50	2005-07-29	용산	1311	Unknown		JP-8or 휘발유	
51	2005-09-29	용산	2661/2658/255 7	700	2,646	JP-8	
52	2007-03-07	용산	7045	900	3,402	디젤	
53	2007-10-30	용산	4713	600	2,268	디젤	
54	2008-07-01	용산	4878	40	151	디젤	
55	2009-05-11	용산	5735	<5		JP-8	
56	2010-02-02	용산	5460	105	397	디젤	
57	2010-06-14	용산	5495	<4 quarts		중고모터 오일	
58	2010-09-29	용산	1324	Unknown		휘발유, 디젤	
59	2010-10-05	게이트1번 (현재16번)	1344	Unknown		Unknow n	-한국 언론 보도로 조사 작. 정화작업 실시 -연료유출 시점 판단불기 총손실량 추정되지 않는
60	2010-10-29	용산	2608	0.6	2	엔진오일	
61	2010-12-24	용산	7090	Unknown		디젤	

연번	일시	지역	빌딩번호	유출량 (Gal)	유출량 (L)	유종	月五
62	2011-05-18	용산	Gate #52	About 3		엔진오일	
63	2011-11-30	용산	Gate #52	About 7		엔진오일	
64	2011-12-06	캠프코이너	AST 1095	About 7		디젤	
65	2013-02-20	용산	1358	Unknown		Unknow n	
66	2013-04-29	용산	2212	15	57	가솔린	
67	2013-04-30	용산	1657 Area	< 5		유압유체	
68	2013-06-04	용산	1390 Area	Unknown		중유	
69	2013-06-28	용산	1416	< 3		디젤	
70	2013-09-17	용산	3740, 3744 Area	Unknown		디젤	
71	2014-03-14	용산	4329	<3		엔진오일	
72	2014-07-25	용산	2269	<3		작동유	
73	2014-08-26	용산	7068A	>10		디젤	
74	2014-09-23	용산	2320	100	378	디젤	
75	2014-11-26	용산	1509	<10		디젤	
76	2015-01-27	용산	4209	5	19	유압유체	
77	2015-01-28	용산	4275	Unknown		디젤	
78	2015-02-25	용산	4151	Unknown		디젤	
79	2015-03-31	용산	4723	5	19	디젤	
80	2015-04-28	용산	4817	20	76	디젤	
81	2015-05-21	용산	5380	50	189	디젤	
82	2015-08-26	용산	1417	30	113	디젤	
83	2015-09-04	용산	5701	20	76	솔벤트 (용매제)	
84	2015-12-07	용산	Gate #16	1	4	엔진오일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 8. 심사결과 : 채택(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11. 의견서 : 별 첨

## 의 견 서

- □ 청원명 :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
- □ 처리하여야 할 기관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장(물순환 안전국)
- □ 처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 □ 채택의견:

- 본 청원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환경사고 등으로부터 서울시 민의 보건안전은 물론 자연환경을 지키고 주한미군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신속한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 조례의 제정을 통해 서울시와 시민이 함께 주한미군기지 내·외부 환경오염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주한미군 측에보다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큰바 본회의에부의하기로 함.

## 청원요지서

접수번호		11	접수연월일	2019. 10. 30			
~1 A1 .11	주 소	- 소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 162					
청 원 인	성 명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0 0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이장희 외 180명			
소개의원	권수정		소속위원회	기획경제			
7) H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						
건 명	관한 조	스레」제정에 관한 청숙	<u> </u>				
소관위·	원회	도시안전건설					

○ 용산에 65년 이상 주둔하였던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미군기지에 대한 반환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반환협상이 마무리되면 용산 미군기지는 '용산공원' 이란 이름으로 서울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바,

군사기지에서 평화·생태공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각종 유해물질과 폐기물 등 부지의 환경오염을 치유하고, 녹지공간으로 복원하는 방안에 관한 서울시의 역할이 필요함.

이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와 참여를 통한 평화·생태공원 조성의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줄 것을 청원함.